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78

2021. 11. 23.(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1월 23일

-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세동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 관련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의 2)

○ 공유재산법령상 민간위원 연임 제한규정 없어 관련 문구 삭제(안 제4조제3항)

–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삭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명칭 변경(안 제30조제1항, 제3항, 제66조)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 법령 개정에 맞춰 사용·대부료 감면 대상 수정·추가(안 제32조)

– 지자체 귀책사유로 대부재산 이용 제한 시 전액 감면 추가

– 청년실업 극복 위한 청년친화강소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50/100 감면 추가

○ 법령 개정에 맞춰 사용·대부료 급등 시 감액 확대(안 제34조)

– (현행) 사용·대부료가 전년 대비 5/10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으로 감액

– (개정) 사용·대부료가 전년 대비 5/10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

○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를 年 최대 6회까지 확대(안 제35조제2항)

○ 기타 상위 법령에 맞춰 조항 수정 및 자구 정비 등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남범우)

○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21.10.21.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 미반영 사항 등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제32조제3항) 사용료(대부료) 감면 사항 추가

- 도의 귀책사유로 이용에 제한 받는 경우 : 전액 감면
- 시행령에서 정한 아래의 경우 : 50% 감면
  - 상시 10인 이상인 공장·연구시설·관광시설 등을 유치하는 경우
  -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 창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하는 경우
  -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
  - 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2) (제34조) 사용료(대부료) 급등시 감액범위 확대(70%→100%)

- 개정내용 : 사용료(대부료)가 전년 대비 5%이상 증가한 경우,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

3) (제35조제2항) 사용료(대부료) 분납횟수 확대 (4회→6회)

- 개정내용 : 100만원 초과 시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 이내 분할납부

현 행	개 정
100만원 초과 : 6개월이내 3회 분납	**100만원 초과 시 연 6회 이내 분납**
200만원 초과 : 9개월이내 4회 분납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히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사용료(대부료) 관련 감면사항 추가, 감액범위 확대, 분납횟수 확대 등을 반영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3항 중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를 “하되,”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7조제2항·제8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지역 특산물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 : 100분의 30

제34조 중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를 “해당연도의 연간”으로, “대부료가”를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말한다)보다”로, “증가하여”를 “증가한 경우, 그 100분의 5 이상”으로, “100분의 70으로 감액조정 한다”를 “전액 감액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를 “연 6회 이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 사업을 하여 조성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제1호 전단 중 “적용기간을”을 “적용범위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업인”을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등의 납기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 설>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② (생 략)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하되, ----------.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③ (생 략)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제8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제27조제6항----------. ⑤ ---------- 제27조제6항 ----------

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 략)	---------- ---------- ---------- ----------.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로 하고,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가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토석 채취료 등) ① ----- ---------- ---------- ---------- ---------- ---------- ---------- 감정평가법인등(---------- ---------- ----------감정평가법인등-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감정평가법인등- ---------- ---------- ---------- ---------- --.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 략)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7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2항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물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지역 특산물을 생산·전시·판매를 위한 경우 : 100분의 30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으로 감액조정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간은 최초 년도에는 사용시작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생 략) ④ (생 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납부기한----------. ② --------연 6회 이내--------. 1. <삭 제> 2.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⑤ (생 략) ⑥ <신 설>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 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생 략) 1.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도 소유가 아닌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2. (생 략)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도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1. ----------적용범위를----------. 2. (현행과 같음) 3. -----------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8. (생 략)	4.~8. (현행과 같음)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도지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 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감정평가법인등------.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 2. 4.>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대부기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 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을 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정지·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